

2006. 12. 19. ~ 12. 21.

제13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

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

안

검 토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[전문위원 안상룡]

<의안번호 제2006- 68호>

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
안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11. 21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6. 12. 13.

2.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

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계	256,298,369	239,319,217	16,979,152	7.1%
일반회계	217,367,382	202,845,680	14,521,702	7.2
특별회계	38,930,987	36,473,537	2,457,450	6.7

-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69억 7,915만 2천원이 (7.1%)증액된 2,562억 9,83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- 일반회계 예산안은 2,173억 6,73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5억 2,170만 2천원이(7.2%) 증액되었으며,
- 특별회계 예산안은 389억 3,098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5,745만원이(6.7%) 증액되었음.

나 세입현황(일반회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계		217,367,382	202,845,680	14,521,702	7.2%
자체수입	지방세수입	13,612,699	11,564,209	2,048,490	17.7
	세외 수입	20,922,372	19,570,311	1,352,061	6.9
의존수입	지방교부세	107,569,658	105,896,658	1,673,000	1.6
	조정교부금 (재정보전금)	3,240,000	3,240,000	0	-
	국고보조금	48,396,835	45,016,968	3,379,867	7.5
	도비보조금	23,625,818	17,557,534	6,068,284	34.6

다. 특별회계(세입 · 세출)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계	38,930,987	36,473,537	2,457,450	6.7%
총무위원회소관	642,018	642,418	△400	-
의료보호기금	480,388	480,788	△400	-
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	161,630	161,630	0	-
산업건설위원회	38,288,969	35,831,119	2,457,850	6.8

라. 일반회계(세출)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계	217,367,382	202,845,680	14,521,702	7.2%
총무위원회	110,117,586	107,498,681	2,618,905	2.4
의회사무과	978,641	992,511	△13,870	△1.4
기획감사실	11,647,350	9,441,799	2,205,551	23.4
읍 면	8,357,914	8,357,534	380	-
종합민원실	636,717	636,717	0	-
행 정 과	37,007,146	36,820,567	186,579	0.5
재 무 과	2,424,816	2,399,541	25,275	1.1
문화관광과	13,276,953	12,517,833	759,120	6.1
사회복지과	24,740,473	25,390,455	△649,982	△2.6
전략사업추진단	3,846,920	3,716,120	130,800	3.5
보 건 소	5,324,697	5,349,645	△24,948	0.5
교육문화센터	1,498,461	1,498,461	0	-
수송대관리사무소	377,498	377,498	0	-
산업건설위원회	107,249,796	95,346,999	11,902,797	12.5

-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,101억 1,758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50.7%를 점유하며,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1,890만 5천원(2.4%)으로 전체 증가율(7.2%)보다 다소 낮게 증가되었음.

3. 검토의견

▣ 의회사무과(설명서 P57~58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세출(일반회계)	978,641	992,511	△13,870	△1.4%

○ 금번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, 기정 예산액 대비 1,387만원이(△1.4%) 감액된 9억 7,86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◇ 삭감된 주요 사유는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부분으로 검토되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■ 기획감사실 소관(설명서 P61~64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세출(일반회계)	5,051,142	5,066,807	△15,665	△0.3

○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, 기정 예산액 대비 1,566만 5천원이(△0.3%)감액된 50억 5,11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◇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: 35,760천원 (설명서 p61)

- 세항별 내용을 살펴보면, 각종 소송사건이 연초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편성한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사례금이 부족한 실정인 바,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수행에 필요한
 - 항소 및 상고비용 100만원과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 1,050만원 및 승소사례금 3,466만원에 대한 일반수용비 4,616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
 - 행사운영비 600만원 삭감은 국가생산성 대상 등 우수사례 발표회 참가자료 프리젠테이션,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예산확보 하였으나 프리젠테이션을 자체제작하고 부스 등을 개설하지 않아 지출요인이 없었음.
 - 행사실비보상금 440만원 삭감은 상반기 지방선거 등으로 선거법상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, 군정현안 설명회 참석자에게 일부 집행하고 잔액에 대하여 예산 삭감한 것임.
 -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550만원 삭감은 포상금 지급요인이 없어 삭감한 것으로,
 - 배상금 등 5,062만 5천원은 추경에서 수승대 의사사건과 도체 참가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예산확보 하였으나, 거창군의 승소와 항소로 인하여 배상금 지출이 불필요하여 삭감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
 - 그러나 민간위탁금 470만원 증액 편성 건은 군민정보화 교육 인원이 계획보다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음이 확인 되었으나,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.

■ 행정과 소관(설명서 P71~72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세출(일반회계)	37,007,146	36,820,567	186,579	0.5%

○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,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,657만 9천원이 (0.5%)증액된 370억 71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◇ 인사행정관리 : 5,637천원중

- 일반운영비 4,032천원은 농산물 등 각종 도난사고 방지 및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인근군과 연접한 거창 IC 광주방향, 거창 IC 대구방향, 가조 IC 광주방향, 가조 IC 대구방향 등에 CCTV 8개소를 2006. 10. 27 증설 운영함에 따른 회선사용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
- 일반보상금 1,605천원은, 거창군 이장연합회 읍면 분회장들에 대한 연수비가 도비에서 지원되어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며,

◇ 주민자치지원의 일반보상금 : △2,839천원은

-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인 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정리한 것임.

◇ 공무원단체관리 : 183,781천원은

-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(연가보상비) 규정에 의하면 최대 20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,
 - '06년도 당초예산에 10일분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만 편성되어 있었으나, 8일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■ 재무과 소관(설명서 P75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세출(일반회계)	2,424,816	2,399,541	25,275	1.0%

-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, 기정 예산액 대비 2,527만 5천원이(1.0%)증액된 24억 2,48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◇ 재산관리 : 25,275천원은

-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 집행한 것으로, 금회 추경에 일반운영비 16,475천원과 국내여비 8,800천원을 편성한 것으로,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■ 문화관광과 소관(설명서 P79~84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세출(일반회계)	10,464,415	10,198,465	265,950	2.6%

-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,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,595만원이(2.6%)증액된 104억 6,44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◇ 문화예술관리 : 180,050천원은

- 경상적 경비 △37,450천원과 사업예산 217,500천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,
 - 이중 경상적경비는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거나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며,
 - 사업예산 2억 1,750만원은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2억원은 2006 문화관광부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에 갈계숲 전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가 12월중에 교부됨으로써 추경에 편성 후 명시이월 조치하기 위한 것이며,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됨에 따라 정리한 것임.

◇ **스포츠레저 : 85,900천원은**

- 경상적 경비 △14,100천원의 삭감부분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한 것이며, 사업예산 1억원은 거창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의 기금에서 증액 변동된 것임.

◇ **관광진흥 : 493,170천원은**

- 관광관련 사업추진 참석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△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, 사업예산 90,169천원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관광시설 수해복구 2건에 대한 도비지원과 관광기념품 입상작 생산장려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,

◇ **관광개발 : 410,001천원은**

- 문화재인 오례사에 대한 수해복구, 영빈서원과 남하면 심소정 주변정비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에 의해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.

■ 사회복지과 소관(설명서 P87~96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일반회계	24,740,473	25,390,455	△649,982	△0.3%

○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,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4,998만 2천원이(△0.3%)감액 된 247억 4,04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◇ 사회보장 : △1,192,309천 원은

○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된 483명에게 설과 추석때 일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출이

불가능하여 전액 삭감한 △966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경상남도의 변경내시로 인해 전체적으로 재배분됨에 따라 △11억 8,264만 9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

◇ 복지기획 : △98,402천 원은

○ 자활소득공제에 37명에 소요액 부족으로 국도비 변경 증액내시에 따른 600만 7천 원,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지원사업인 긴급복지 지원 △1억 1,726만 7천원 삭감은 당초 350명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 예산감액 조치에 의해 조정된 것이며, 사회복지 한마음 증진 대회 개최 1천만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(장려)됨에 따라 특별지원금 8천만원중 복지행정 혁신 및 직원역량 강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 사용기준대로 조치한 사항이며,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85만 8천원은, 도에서 후견기관 규모별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한 것임.

◇ 경로복지 : △55,338천 원은

○ 경로연금 △18,965천원, 노인교통수당 △46,303천원,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△59,270천원은 국도비 최종교부결정에 의거 삭감처리 된 것이며, 삶의 쉼터 집기구입 7천만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(장려)됨에 따라, 특별지원금 8천만원 중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됨.

◇ 여성청소년 : △7,732천 원, 장애인아동 : 703,799천 원은

- 국도비 최종교부결정에 의거 삭감처리 또는 증액되거나 추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(설명서 P99~100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세출(일반회계)	3,846,920	3,716,120	130,800	3.5%

-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,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,080만원이(3.5%)증액된 38억 4,692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◇ 전략사업 : △19,200천원은

- 인구증가 시책 유공자 보상금 16,000천원과 공무원 포상 3,200천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(2006. 9. 6)에서 편성된 사항으로, 금회 추경에 삭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,

◇ 교육지원 : 150,000천원은

-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0,000천원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는 교육기관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와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(거창여고)에 대한 지원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, 그 지원근거와 추진경과 및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.

■ 보건소 소관(설명서 P103~107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세출(일반회계)	5,324,697	5,349,645	△ 24,948	△0.5%

-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, 기정 예산액 대비 2,494만 8천원이(△0.5%)감액된
53억 2,46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- ◇ 주요감액 편성한 사유는 보건행정의 보조사업에서 의료장비인 안마의자 외 3종에 대한 400만원 증액편성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금회 편성된 것임.
- ◇ 건강증진 인건비 △150만원 삭감부분은 당초예산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퇴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에서 보조된 사업으로, 일반운영비(201-01)로 목변경 재편성한 것이며, 산모·신생아 도우미 지원 240만원은 당초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조치한 것이고, 기타 건강증진 업무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△22,810천원, 불임부부 치료비 사업 △1,648천원, 암조기 검진사업 △8,781천원은 경상남도 당초 사업량 변경에 따라 예산액의 감액이 있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임.
- ◇ 예방의약 10만원과 방문보건 인력 위탁교육비 179만 2천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음.